

1. 개정이유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한 「원자력 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안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변경·해임 관련 신고 절차 및 자격요건을 규정

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안 제70조의4 신설)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

다. 핵연료물질사용자 정기검사 면제 관련 규정(안 제75조의2 신설)

- 검사 결과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함

라. 핵연료물질 사용 등 개시 기간 지정(안 제75조의3 신설)

- 법 제48조제1항제1의2호에서 위임한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 개시 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규정

마.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등에 대한 교육(안 제148조, 제148조의2, 제156조 및 별표 10의3 제4호의2 신설 등)

- 교육 실시 주체를 법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규정

바.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정체 등가 선량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별표 1 제1호 등가선량한도의 수정체란)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24년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점검결과(‘25)를 반영하여 “연간 150 mSv” 이내에서 “연간 50 mSv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 mSv” 이내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소마다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② 법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새로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1. 법 제4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핵연료물질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
2. 법 제4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기 전
3.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해임 후 선임하는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70조의3(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46조의2제7항

에 따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3호나 제7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
사선관리기술사(이하 “방사선관리기술사”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제73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핵연
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
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면허를 소지한 경우: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였
거나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

2.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기술사로 등록하거나 등록
을 갱신

③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핵연료물질 안전
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제70조의4(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핵연료물질
사용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즉

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해 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6조의2제6항제1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2. 법 제46조의2제6항제2호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2.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 취급업무 종사경력 및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72조제1호가목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우에는 사용시설”을 “: 사용 또는 소지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이하 “방사선관리기술사”라 한다)”를 “방사선관리기술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

의 부분) 중 “총리령에 따른”을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로, “정기적으로 받아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 정기검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75조 및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면제의 기준 등 검사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의3(사용 또는 소지 개시기간) 법 제48조제1항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148조의 제목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을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그 외의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은 각각 신규과정과 정기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1. 신규과정: 작업 종사 전

2. 정기과정: 매년. 다만, 해당 연도에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연도의 정기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제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장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1. 신규과정: 작업 종사 전

2. 정기과정: 매년

④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작업종사자가 아닌 사람(수시출입자 및 방문, 견학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는 출입할 때마다 출입하기 전에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다만, 수시출입자가 출입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⑤ 신고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본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신규과정: 선임 전

2. 정기과정: 매년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위원회가 위탁하여 실시하는 기관에서 받게 해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148조의2의 제목 “(교육계획의 제출)”을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의 교육계획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재단”을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기본교육계획”을 “교육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훈련분야”를 “교육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재단”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재단”을 “위탁교육기관”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48조의3을 삭제한다.

제156조제2항제5호 중 “법 제106조제2항”을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등가선량한도의 수정체란을 “연간 150”에서 “연간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11조제1항제15호”를 “법 제111조제1항제16호”로 한다.

1.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6조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의 실시 중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포함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기본교육의 실시

나. 법 제106조제2항의 보수교육의 실시 중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소지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10의2 제5호 중 “전전년도말 공표 물가상승률”을 “(1+ 전전년도말 공표 물가상승률)”로 한다.

별표 10의3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에 대한 부담금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가. (신고사용자) 신고분야	1) 신규과정	25,000
	2) 정기과정	25,000
나. (허가사용자) 일반분야	1) 신규과정	65,000
	2) 정기과정	25,000
다. (허가사용자) 방사선투과검사분야	1) 신규과정	80,000
	2) 정기과정	40,000

부 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0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소마다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u> <u>② 법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새로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u> <u>1. 법 제4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핵연료물질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u> <u>2. 법 제4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기 전</u>

<신 설>

3.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해임
후 선임하는 경우: 해임한 날
부터 30일 이내

제70조의3(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46조
의2제7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안
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
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
는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3호
나 제7호에 따른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면허나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국
가기술훈격법」에 따른 방사
선관리기술사(이하 “방사선관
리기술사”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제73조제1
항에 따른 시설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법 제84
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
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신 설>

자일반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
선관리기술사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방
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면허를 소지한 경우: 선임일
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법 제106조제2
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

2.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
지한 경우: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기술사
법」 제5조의7에 따라 기술사
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

③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핵연료
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제70조의4(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
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
임한 핵연료물질사용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즉시 핵연

료물질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해 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6조의2제6항제1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2. 법 제46조의2제6항제2호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2.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 취급업무 종사경력 및 교

	육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72조(허가기준) 법 제46조제4호	제72조(허가기준)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
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
1. 장비	1. ---
가. 밀봉된 핵연료물질을 사	가. -----
용 또는 소지하는 <u>경우에</u>	----- <u>경우:</u> --
는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
나. 밀봉되지 아니한 핵연료	나. -----
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	-----
는 <u>경우에는 사용시설마다</u>	- <u>경우: 사용 또는 소지하</u>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	<u>는 시설</u> -----
정기 각 1대 이상	-----
2. 인력	2. ---
가.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	가. -----
른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	-----
는 소지하는 <u>경우에는</u> 법	----- <u>경우:</u> -----
제84조제2항제3호나 제7호	-----
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감	-----
독자면허나 방사선취급감	-----
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 <u>방</u>
「 <u>국가기술자격법</u> 」에 따	<u>사선관리기술사</u> -----
른 <u>방사선관리기술사(이하</u>	-----
“ <u>방사선관리기술사</u> ”라 한	-----
<u>다</u>) 중 1명 이상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법 제 8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제75조(정기검사)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에 따른 위원회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나. ----- 경우: -----

제75조(정기검사) ① -----
-----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 받아야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 정기검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5조의2(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75조 및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신 설>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
시출입자 교육) ① 원자력관계
사업자가 법 제106조제1항에 따
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
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해
야 한다.

1.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
용자는 제외한다)가 실시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
육: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

2.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
라 신고사용자가 실시하는 방
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정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면제의 기
준 등 검사면제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의3(사용 또는 소지 개시기
간) 법 제48조제1항제1의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
년을 말한다.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그
외의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
는 사람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
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은 각
각 신규과정과 정기과정으로 구
분하여 실시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

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안전재단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는 제외한다)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1. 신규과정: 작업 종사 전
2. 정기과정: 매년. 다만, 해당 연도에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연도의 정기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제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장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1. 신규과정: 작업 종사 전
2. 정기과정: 매년

④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작업종사자가 아닌 사람(수시출입자 및 방문, 견학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는 출입할 때마다 출입하기 전에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만, 수시출입자가 출입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⑤ 신고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본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신규과정: 선임 전

2. 정기과정: 매년

⑥ ----- 제5항-----

-----.

<삭 제>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위원회가 위탁하여 실시하는 기관에서 받게 해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① 안전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생략)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교육훈련분야만 해당한다)
3. ~ 5. (생략)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안전재단은 교육 실시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제148조의2(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의 교육계획 제출)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

--- 교육계획-----
-----.

1. (현행과 같음)
2. -----교육분야-----
3. ~ 5. (현행과 같음)

② ----- 위탁교육기관-----

----- 않는 -----

-----.

③ 위탁교육기관-----

보고해야 ----.

<삭제>

<u>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u> <u>제148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방</u> <u>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u> <u>자는 제외할 수 있다.</u>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산 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1. ~ 4. (생략) 5. <u>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u> <u>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u> 6. · 7. (생략) ③ ~ ⑤ (생략)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u> <u>본교육 및 같은 조 제2항</u>----- ----- 6.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